

예산총칙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39,003,000	34,170,090
일반회계	1,032,825,000	30,984,750
특별회계	106,178,000	3,185,340
공기업특별회계	84,354,000	2,530,620
상수도사업	36,173,000	1,085,190
하수도사업	48,181,000	1,445,430
기타특별회계	21,824,000	654,7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223,000	186,69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자기금	807,000	24,21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051,000	31,530
주택사업	334,000	10,020
주차장설치사업	443,000	13,29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246,000	7,380
보령담주변지역지원사업	691,000	20,730
의료급여기금사업	2,219,000	66,570
공공급식지원센터	9,810,000	294,3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275,095천원 으로 한다.

제 4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제 5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위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국: 국고보조금 / 균: 균특회계보조금 / 기: 기금보조금 / 특: 특별교부세 / 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도비보조금 / 조: 특별조정교부금